보건복지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
배 포 일	2020. 3. 20. / (총 12매)			
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	팀 장 담 당 자	이 스 란 윤 민 수	전 화	044-202-3803 044-202-3898
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	과 장 담 당 자	노 혜 원 이 승 훈	전 화	044-200-2679 044-200-2295
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	팀 장 담 당 자	김 기 남 박 나 연	전 화	044-202-3810 044-202-3811
국세청 징세과	과 장 담 당 자	유 병 철 정 상 수	전 화	044-204-3001 044-204-3002
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	팀 장 담 당 자	신 현 두 윤 동 빈	전 화	044-202-2473 044-202-2474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	과 장 담 당 자	박 민 정 최 문 선	전 화	044-202-3510 044-202-3512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

- ▲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방안,
▲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-

□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**는 오늘 **정세균 본부장**(국무총리) **주재**로 **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**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·도와 함께 **▲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방안, ▲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** 등을 **논의**하였다.

□ 이 자리에서 **정세균 본부장**은 **해외 유입 요인을 차단**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상의 **추가적 조치**도 **신속히 준비하여 추진**할 것을 지시하였다.

○ 또한 국세청의 '**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**'을 보고받고, **전국의 모든 자영업자·소상공인**이 **피해를 보고 있다**면서 한시적이라도 **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**도 **적극 추진**할 것을 지시하였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○ 한편 민생지원은 **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총동원해서** 이뤄져야 하며, **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필요한 조치**는 **선제적이고 주체적**으로 **신속·과감하게 시행할 것**을 당부하였다.

1 유럽발(發)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**3월 22일(일)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**으로 **검역**을 **전면 강화**할 예정이다.

○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(3. 19.~)하였으나, **유럽 전역**에서 **확진·사망자가 급증**하고, 유럽발 입국자 **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·확진자가 증가**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.

□ **유럽발 입국자 전원**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**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**하고, 별도의 지정된 시설*에서 **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**한다.

* (유증상자) 검역소 격리시설, (무증상자) 지정된 임시생활시설

○ 진단검사 결과 **양성**인 경우에는, **중증도**에 따라 **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**하여 치료를 실시하고,

○ **음성**이면 **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**의 경우 **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**를 **원칙**으로 하고, **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**를 실시하며, **단기체류 외국인**은 **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**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**해외에서의 위험 요인을 예의 주시**하고, 이를 **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**할 계획이다.

2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

□ **국세청**(청장 김현준)은 **코로나19 확산**으로 어려움을 겪는 **자영업자·중소기업** 등 납세자가 **조속히 피해**를 **극복**할 수 있도록 **전방위적**인 **세정 지원 대책**을 **전개**하고 있다.

○ 먼저 음식·숙박업 등 코로나19 **피해 납세자**를 대상으로 법인세(3. 31.) 등의 **신고·납부기한**을 **최대 9개월 연장**하고 고지된 국세를 **최대 9개월 징수 유예**하는 **세정 지원 대책을 마련**하여 **추진**하고 있다.

※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

○ 둘째, 피해 납세자에 대한 **세무조사 착수**를 **피해 상황이 진정**될 때까지 **잠정 유예***하고, **진행 중**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**연기·중지**하고 있다.

* 다만,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착수

○ 셋째,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**부가가치세 환급금**을 **기한**보다 **10일 전**에 **조기 지급**하고, **경정청구**도 1개월 단축 **처리**하는 한편,

- 근로소득자의 **자금 및 경제적 부담**을 최대한 **완화**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**연말정산 환급금**을 **10일 이상*** **조기 지급**한다.

* (일괄환급) 당초 3. 31. → 단축 3. 20. (개별환급) 당초 4. 10. → 단축 3. 31.

※ 현재까지 **세정지원 실적** : **신고·납부기한 연장**, **세무조사 유예**, **환급금 조기 지급** 등 **총 14만3298건, 1조6061억 원 규모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□ 아울러, 「**특별재난지역**」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·청도·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**법인세 신고기한**(3. 31.) 뿐만 아니라 **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**(3. 31.)에 대해서도 **납부기한**을 **1개월간 직권 연장**하고,

○ **해당 지역 중소기업**에 대해서는 신청 시 **최대 2년**까지 **납기연장·징수유예·체납처분 유예**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**대구·경북 지역** 전체 **세무조사**에 대해서는 코로나19 **상황 안정화 시점**까지 **전면 중단**한다.

□ 앞으로는 **특별재난지역 법인**의 부가가치세 **예정신고·납부기한**(4. 27.)을 **1개월 직권 연장**하고, **개인 사업자**의 부가가치세 **예정고지·납부기한**을 **3개월 직권연장**할 계획이며,

○ **특별재난지역 외** 코로나19 **피해 납세자**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**예정신고·고지납부기한**(4. 27.)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**3개월 이내 연장**하고 **피해**가 지속될 경우 **최대 9개월**까지 **연장**할 예정이다

※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,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

○ 또한, 코로나19 **상황이 장기화**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**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기한**(6. 1.)을 **직권연장**하는 방안도 **적극 검토**할 방침이다.

3 요양병원·요양시설 방역 관리 강화 방안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**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·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**하기 위해 **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,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**를 **실시**할 **계획**이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○ 요양병원·요양시설은 **중증환자,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**으로서 **최근** 코로나19 **집단감염 사례가 발생**하고 있어 **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**되어 왔다.

○ 이에 ①**방역관리자** 지정, ②**외부인 출입제한**, ③종사자(간병인)에 대하여 매일 **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** 및 기록, ④유증상자는 즉각 **업무 배제**, ⑤**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**을 **내용**으로 하는 **행정명령** 및 **행정지도 조치**를 통해 **능동적인 감시체계**를 **구축**하여 **집단시설 감염 예방**을 **더욱 강화할 계획이다.**

○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**행정명령**의 **실효성을 확보**하기 위하여 이 **명령을 위반**하여 **집단감염**이 **발생**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**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**을 **제한**하고, **추가방역 조치**에 대한 **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**할 **예정**이다.

※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「감염병 예방법」 제7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관리·감독 강화와 동시에 **요양병원·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어려움***도 검토해 이를 **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**할 예정이다.

*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, 의료법상 인력 기준 적용 유예 등

4 코로나19 영문·중문 마이크로페이지 개설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**외국어 사용자**를 **위한** 대한민국 코로나19 **영문 누리집**(http://ncov.mohw.go.kr/en/)을 개설(3. 19.)하였으며, 오늘부터는 **중문 누리집**(http://ncov.mohw.go.kr/cn/)도 **개설**하여 **서비스**를 **제공**할 예정이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○ 해당 외국어 누리집(홈페이지)은 우리나라의 **코로나19 현황, 방역 체계** 및 **환자 치료와 관리**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

- 나아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**행동수칙,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** 등에 대한 **정보**도 **제공**한다.

○ 아울러 해당 누리집에서 **매일 오전 11시, 오후 2시 영어 동시통역**으로 진행되는 **정부 브리핑**을 **생방송으로 시청**할 수 있다.

※ 정부 브리핑 생방송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

※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,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.

소속	부서	연락처
기획재정부	종합정책과	044-215-2710, 2712
	물가정책과	044-215-2770, 2771
산업통상자원부	바이오융합산업과	044-203-4390, 4391
조달청	구매총괄과	042-724-7210, 7265
식품의약품안전처	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	043-719-1711, 1722

※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**피해사례**가 있는 경우 **신고센터**(02-2640-5057/5080/5087) 및 **소비자상담센터**(1372), 그리고 **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**(www.mfds.go.kr)을 통해 **적극적**으로 **신고**할 것을 **당부**드립니다.

< 붙임 > 1.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
2. 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3.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4. <입국자> 코로나19 예방·주의 안내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< 별첨 > 1.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
2.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
3.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
4.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
5.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
6. <일반 국민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
7. <확진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
8. <격리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
9.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
10. '여행력 알리기'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
11.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

코로나19 관련하여 **허위·왜곡정보**를 **유포**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행위는 **방역체계에 혼선**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.

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.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< 주요 사례 >

<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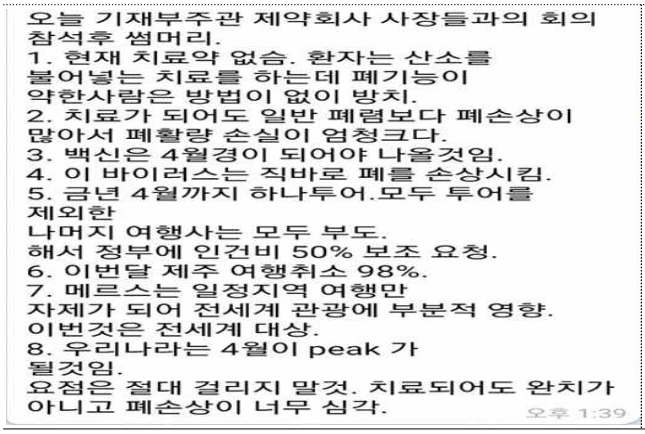

▲ 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(SNS)에서 확산

☞ **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**

※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(진단키트) 발언 관련 >

▲ 美 하원의원 '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,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' 발언 관련

- 해당 발언을 인용, **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**

☞ 美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**'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법(RT-PCR)과 무관**

☞ **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**

<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>

▲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

☞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(SNS)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, **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(3.17, 중대본 브리핑 중)**

※ 2번째 사진 출처 : 유튜브(사용자 : 나는 ***), 3번째 사진 출처 : 경기도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
□ 한국기자협회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(2020.2.21.)

○ 다음은 2020년 2월 21일,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의 주요 내용으로,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1.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2. 세계보건기구(WHO)의 공식 병명은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'입니다.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.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, 사람 이름, 동물·식품 종류, 문화, 주민·국민, 산업,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지역명을 넣은 '○○폐렴' 등의 사용은 국가·종교·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,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,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

3.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·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,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
※ 참조 : **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,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**

2020년 2월 21일

한 국 기 자 협 회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[일반국민]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4.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5.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.
6.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.

[고위험군] :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*

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

1. **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.**
2. 불가피하게 **의료기관 방문**이나 **외출**시에는 **마스크를 착용**하십시오.

[유증상자] : 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1. **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**
2. **집**에서 **충분히 휴식**을 취하시고 **3-4일 경과를 관찰**하여 주십시오.
3. **38도 이상 고열**이 지속되거나 **증상이 심해**지면 ①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**자기 차량**을 이용하고 **마스크를 착용**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**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** 여부를 알려주세요.

[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]

1. **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.**
2. **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4 〈입국자〉 코로나19 예방 · 주의 안내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주의 안내

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전세계 대유행(pandemic)에 따라 입국자의 감염병 예방 ·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〈 입국 후 주의사항 〉

- 귀가시 마스크 착용, 주변인과의 접촉 피하기
- 입국 후 **14일간 다음사항 권고**
  - 외출 자제, 특히 다중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 방문 금지
  - 집에서는 가족과 밀접 접촉 최소화(2m 거리 유지)
  - 집에서 발열, 호흡기 증상 발생 등 관찰하기
    *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 알리기
  - 손 씻기,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지키기

※ 권태감,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

〈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〉

-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, 근육통, 호흡곤란 등)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 금지
- **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☎ 1339),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받기**
-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
  *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,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(DUR) ·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(ITS)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.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(14일)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.

보건복지부
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
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주의 안내

〈 주요 증상 〉

- 발열(37.5℃ 이상),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, 근육통, 호흡곤란 등)

〈 개인 위생수칙 〉
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(손바닥, 손톱 밑 꼼꼼하게 씻기)
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말기
-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발열, 호흡기 등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
-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

〈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 안내 〉

-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'모바일 자가진단 앱' 을 설치하기
-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하기

  *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

※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.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(14일)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.

보건복지부
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
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